

제 15 장 입·퇴소자 관리

제84조(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①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명 “(이하 ‘센터’라 칭한다)은 장기요양 지정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를 입소시키며 입소 정원은 해당시설의 정원의 범위로 하며 모집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유인물, 통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센터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상담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본원 입소절차에 의해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③ 상담자는 입소비용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한 비용을 할인,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알선책을 통하여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의2(이용계약)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 등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약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시 등급갱신 신청을 받아 재계약(갱신)을 하여야 한다.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2008년 7월1일 이전 입소자 제외) 예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면회 및 외출 · 외박을 요청할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4. 수급자의 신변이상에 대해 즉시 연락받을 권리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제공받을 권리
6.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7. 수집 ·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
2.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에 따른 실비
3. 센터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센터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8.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9.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

10.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용 시에는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소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목적, 계약당사자, 급여의 종류, 내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한다.

제84조의3(이용료등 비용) ① 이용료 및 급여비용의 증감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수급자의 등급 및 급여종류가 변경될 시는 이용료 및 급여비용을 개정 적용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고시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제84조의4(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①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서 정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법령에서 정한 비용부담을 급여대상자 또는 당해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② 서비스비용이 법적으로 변경될 시는 개정 적용한다. 비용부담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고시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85조(생활보호관리)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 예방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수급자의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 수급자의 인권 보호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급여제공의 기본이 되는 일련의 원칙 을 윤리행동 강령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3. 수급자 권리규정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어르신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수급자(보호자)의 개별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5. 수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에 따른다.

제86조(이용인원) 센터의 이용 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7조(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
2.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했을 때(서에 따른다).
4. 이용 당시의 사유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5. 계속 보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8조(사망) ① 이용어르신 사망 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례에 따른다.

② 연고자가 없을 경우 해당 관서에 연락하고 관례에 따른다.

제89조(건강관리)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에는 반드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건강 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수급자 및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계병원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선택에 의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치료를 위한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정신질환, 전염병, 임종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 입원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결한다.